#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9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태선·김영배·김남근

정준호 • 박균택 • 맹성규

위성락 · 김주영 · 윤종군

황정아 · 오세희 · 장철민

권칠승 • 이훈기 • 이기헌

조 국・김준형・박 정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송통

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 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 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제5항 중"「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의2 본문 중 "제22조의5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지체"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2호의2 중 "제22조의5제5항"을 "제22조의5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
	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
	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
	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경
	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

<신 설>

⑤ • ⑥ (생략)

-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생 략)
  -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u>다.</u>
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
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u>⑧</u> ・ <u>⑨</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송통신심의위원</u>
<u> </u>
∥92조(시정명령 등) ①

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1. ~ 3. (생략)
- ② ~ ⑤ (생 략)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 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라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_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1. (현행과 같음)
1. (원왕과 필요) 1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7
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지체

아니하다.	
1의3. ~ 5. (생 략)	1의3. ~ 5.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u>제2</u>	2의2 <u>제2</u>
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	2조의5제8항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 17. (생 략)	2의3.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